

	CCTV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 운영 규정		문서번호	3-1-31	
			제정일	2014. 09. 01.	
			개정일	2016. 02. 01.	
			페이지	1/3	관리 부서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·운영과 보호구역 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,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개인의(화상정보에 대한)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·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이하 CCTV(Closed Circuit Television)라 한다.
2. “화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3.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당해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가능한 자연인을 말한다.
4.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·저장·편집·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
제3조 (담당부서 및 민원처리) ① CCTV의 설치· 운영과 보호구역 관리 운영 업무는 사무처 총무팀에서 담당한다.

② CCTV의 관련된 학생의 접수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학생처의 승인하에 사무처 총무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2 장 CCTV 설치 준수 사항

제4조 (사전의견수렴) CCTV의 설치를 할 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5조 (안내판의 설치)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
1. CCTV 설치의 목적
2. 촬영범위 및 시간
3. 관리자 · 연락처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
	CCTV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 운영 규정		문서번호	3-1-31	
			제정일	2014. 09. 01.	
			개정일	2016. 02. 01.	
			페이지	2/3	관리 부서 사무처

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 사항

제6조 (수집의 제한)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 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가 특정된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 (보호조치 등) ① CCTV 담당부서에서는 화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CCTV 담당부서에서는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제9조 (보유기간 및 삭제) ①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30일 이내로 보유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②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4 장 보호구역 관리 운영

제11조 (사전의견수렴) 보호구역 관리 운영 할 시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보호구역 지정) ① 본 대학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관리 시설은 시스템실로 한다.

	CCTV 설치 및 보호구역 관리 운영 규정		문서번호	3-1-31		
			제정일	2014. 09. 01.		
			개정일	2016. 02. 01.		
	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사무처

제13조 (보호구역 보안) ① 보호구역의 보안대책은 CCTV 설치 운영 ·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통제를 하며,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카메라 소지 및 시설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